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25)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최호정 의원입니다.

- 오늘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개정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그리고 변경 등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거나 부결된 안건의 경우 5년간 재상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만이나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5년 동안은 다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이나 조례에서는 상정 제한과 관련된 위임 사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명백한 위법·무효의 규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의 편의성과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재상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